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95

발의연월일: 2020. 9. 28.

발 의 자:김원이・이용빈・이동주

양정숙 · 허종식 · 윤재갑

이성만 · 허 영 · 박 정

최혜영 · 박홍근 · 우원식

오영환 · 인재근 · 김승원

남인순 · 오영훈 · 한병도

이낙연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섬은 단순히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을 넘어서 영토 수호의 전진기지, 전통문화와 생태자원의 보고, 해양수산업과 관광산업의 거점으로서 가 치가 있음.

최근에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'섬의 날(8.8.)'을 제정하였음. 영토·자원·생태·역사·문화· 관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섬의 가치를 인정한 것임.

그러나 그동안 체계적인 섬 관리 및 연구·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없어, 유·무인도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업이 미흡했음.

이에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

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·정책수립·진흥을 위하여 「한국섬진흥원」을 설립하고자 함(안 제15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(한국섬진흥원 설립) ① 도서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·정책수립·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 -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③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- 1. 도서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
 - 2.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평가·정책수립 지원
 - 3. 도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 및 관리
 - 4. 도서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, 섬 관광 활성화, 섬의 생태·문화·역사·자원의 활용과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
 - 5. 도서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, 컨설팅 및 홍보

- 6.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·협력
- 7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
- 8. 그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⑤ 진흥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- ⑥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, 시설, 운영 및 사업추진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.
-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진흥원의 설립준비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섬진흥원설립위원회(이하 "설립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-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설립 당시 진흥원의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.
-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서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처 계적인 조사·연구·정책수립·전 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(이 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을 설립 한다.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,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	현 행	개 정 안
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시업을 한다. 1. 도서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 2.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평가정책수립 지원 3. 도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 및 관리		제15조(한국섬진홍원 설립) ① 도 서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조사·연구·정책수립·진 홍을 위하여 한국섬진홍원(이 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을 설립 한다.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,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③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한다. 1. 도서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 2.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평가· 정책수립 지원 3. 도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

- 의 생태·문화·역사·자원의 활

 용과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

 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
- 5. 도서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,컨설팅 및 홍보
- 6.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· 협력
- 7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 는 사업
- 8. 그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⑤ 진흥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- ⑥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, 시설, 운영 및 사업추진에 드는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에 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.

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

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

 을 준용한다.